의 안 번 호	제100호
의결 연월일	2019. 9. 19.

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-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9월 10일 서원 의원 외 6명

나. 회 부 일 자: 2019년 9월 11일

다. 상 정 일 자: 2019년 9월 19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 : 서원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,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 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# 나, 주요내용

- 목적 및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O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재원과 적립기준 등을 정함(안 제3조)
- 적립된 기금의 사용기준과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- 기금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회계장부 비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준용 규정 및 존속기한(안 제9조~제10조)
- O 성격이 유사하여 본 조례안에 포함시킨 「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는 폐지함(안 부칙 제2조)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5. 토론 요지 : 생 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